

〈부 록〉

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- 이 내용은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정리한 것임.
- 2015. 12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.

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위생 검사비 : 수출임산물의 잔류 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○ 해외공동물류센터 : 주수출국 현지 냉장·냉동 물류창고 지원 	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('16. 1월)
			임업통상팀 (042-481-4086)
②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개교(연간 150백만원, 5년간 지원) *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교육 및 연구기반 확대 	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'16. 1월)
			산림정책과 (042-481-4199)
③ 밀원수림 조성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 된 밀원 단지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까시나무 등 주요 밀원수종 조림 (5개 지방청, 150ha) 	'16년 사업계획 ('16. 1월)
			산림자원과 (042-481-4185)
④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개 품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부목재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 보드, 목재펠릿, 목재칩, 목탄, 목재브리켓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1개 품목('16.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성재, 목질바닥재, 성형목탄 추가 ○ 14개 품목('16.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PC, OSB, 난연목재 추가 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('16. 1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204)
⑤ 벌채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두베기 최대 면적 : 50ha ○ 모두베기 존치 방법 : 단목, 군상, 수림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두베기 최대면적 : 20ha ○ 모두베기 존치방법 : 군상, 수림대 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16. 5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8875)
⑥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지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제한 없음 -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6. 1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20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⑦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	○ 공·사유림에 보조 지원	○ 경제림육성단지 안의 사유림에만 보조지원	2016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('16. 1월)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 4195)
⑧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	○ 고정금리 <신 설>	○ 변동금리 적용 ○ 숲속야영장, 레포츠시설 추가	201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집행지침 ('16. 1월)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2)
⑨ 유통기반지원 사업 지원 확대	<신 설>	○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추가 - 도서지역의 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 ○ 저장 · 건조시설 추가 - 건조선풍기, 농업용 공기교반기 ○ 가공장비 추가 - 세절기 추가	2016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('16. 1월)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7)
⑩ 임산물 생산 지원기준 변경	○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자 ○ 노지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는 최소 330㎡ (100평) 이상의 면적을 소유 ○ 유기질 비료 보조율 - 국비 6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	○ 톱밥배지 생산 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'종자산업법'에 따라 종자업 등록,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(자가소비는 제외)	2016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('16. 1월)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, 4196)
⑪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추가	○ 집재기, 기계톱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·운반하는 장비	○ 집재기, 기계톱, 우드그랩,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·운반하는 장비	2016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('16. 1월)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 4209, 419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⑫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	<신 설>	○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 허용 * 「산림휴양법」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	산지관리법 시행령 ('16. 1월)
			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	○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등	○ 660제곱미터 이상의 풍력발전시설 및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	산지관리법 시행령 ('16. 1월)
			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⑭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	○ 국유림 가격에 10/1000을 곱한 금액	○ 국유림 가격에 10/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 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6. 6월)
			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4)
⑮ 산림복지 진흥	<신 설>	○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- 일정한 등록기준(기술인력, 자본금, 사무실)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, 산림휴양, 산림치유, 숲해설, 유아숲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○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제도 -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를 발급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이용권 수탁기관(바우처 가맹점)에서 사용이 가능 ○ 산림복지단지 조성 - 일정요건 충족 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가능	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('16. 3월)
			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211)
⑯ 공 · 사립자연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	○ 국유림만 해당	○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 의제처리 가능 범위를 공 · 사유림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까지 확대	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('16.1월)
			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21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교육 전문 과정 단일과정으로 운영 ○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의실 규모 100 제곱미터 이상 ○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심의와 목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의 이원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교육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으로 구분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는 공통 과정의 교육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○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기준 강의실 규모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의실 규모 49.5제곱미터 이상 ○ 산림교육프로그램 ·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 일원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,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산림교육심의 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	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5.11.18)
⑯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·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및 타 법에 따른 수원 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 사전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	산림보호법 ('16. 1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6)
⑰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, 경관보호구역, 수원함양보호구역(1·2종)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	산림보호법 시행령 ('16. 1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6)
㉙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	○ 45,000원/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8,500원/일('15년 대비 7.8% 인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가 인상 	2016년 사업계획 ('16. 1월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8)
㉚ 산불방지 교육·훈련 위탁업무 처리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업무를 계약, 협약, 용역으로 처리 ○ 원가계산을 '14년 까지 교육운영 실적에 따라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처리를 간소화 ○ 원가계산을 '15년도 운영 실적에 따라 적용 	산불방지교육훈련 위탁업무 처리기준 ('16. 1월) 산불방지과 (042-481-8852)
㉛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분부장 지위 격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분부장 : 산림보호국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분부장 : 차장 	산림보호법 시행령 ('16. 1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㉓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·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 설치 ○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·훼손한 자에게는 과태료(50~200만원) 부과 	산림보호법 시행령 ('16. 1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6)
㉔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사업도 사방 사업 비용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,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,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	사방사업법 시행령 ('16. 1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-4272)
㉕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억원 이상 	사방사업법 시행령 ('16. 1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-4272)
㉖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6. 1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-4272)
㉗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, 통계·추이 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 확대 ○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	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('16. 2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38)
㉘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 체계 시범 운영('15.12~'16.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기능 	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('15. 12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69)

